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88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의자 : 김우영 · 오세희 · 김남근  
최민희 · 이광희 · 김윤  
이재강 · 복기왕 · 박홍배  
최혁진 · 한민수 · 윤준병  
박민규 의원(13인)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 조작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타인  
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최근에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 · 단체 등에 대해 유튜브  
채널이나 1인미디어 등 실시간 · 비실시간 화상 · 영상매체를 통해 허  
위 · 조작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켜 개인 및 사회 조직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문  
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1인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 · 비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화상 · 영상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을 삭제 함(안 제44조의3 삭제).

나.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유통 정보로 명확화 함(안 제44조의7 제1항제2호).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존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불법정보 유통을 추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의10 신설).

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12 신설).

사.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4조의3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에 불법정보 처리에 관한 부분을 추가함(안 제64조의5).

자.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친고죄로 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반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함(안 제7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를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범죄를”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9의 제목 중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불법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수”로 한다.

4.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

②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

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업무

제44조의10을 제44조의11로 하고, 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0(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2(손해배상 책임) ①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1항에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의5제1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각각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를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의 조사·점검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6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제1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으로”로,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2항의”로 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u> <u>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u> <u>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u> <u>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u> <u>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u> <u>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u> <u>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u> <u>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u> <u>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u> <u>다.</u>	<u>&lt;삭 제&gt;</u>
<u>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u> <u>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u> <u>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u> <u>여서는 아니 된다.</u>	<u>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u> <u>등) ① -----</u> ----- ----- ----- -----.
1. (생략) 2. <u>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u> <u>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u> <u>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u> <u>훼손하는 내용의 정보</u>	1. (현행과 같음) 2. <u>부호·문언·음향·화상 또</u> <u>는 영상으로 공공연하게-----</u> ----- ----- -----.
3. ~ 8. (생략) 9. 그 밖에 <u>범죄를 목적으로 하</u>	3. ~ 8. (현행과 같음) 9. ----- <u>다른 법률에서 규정하</u>



(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

②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

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수-----

제44조의10(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  
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  
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  
문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  
육의 내용 및 방법, 교육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생략)

<신설>

제44조의11(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현행 제44조의10과 같음)

제44조의12(손해배상 책임) ① 이  
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제44조의7제1항제2호에 따

른 정보 중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1항에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제외 한다.

<신 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

## 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의5에 따른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 따른 과징금은 제3항  
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  
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  
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  
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  
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

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

## 1.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3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 5. (생 략)

<신 설>

-----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으로-----  
-----  
-----  
-----  
-----7천만원-----.

③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  
-----.

제73조(별 칙) -----  
-----  
-----  
-----.

2.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

6. ~ 8. (생략)	<u>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u> 6. ~ 8. (현행과 같음)
--------------	--